

문화로 세상의 **빛**이 되는

KEIMYUNG COLLEGE UNIVERSITY SINCE 1962

2021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신입생
2차 모집안내
(사회복지상담과, 세무회계정보과)



계명문화대학교
KEIMYUNG COLLEGE UNIVERSITY

1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53조의 2” 에 의거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정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2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학 과 명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상담과(야간)	3
	세무회계정보과(야간)	6
	합계	9

※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2년제 과정입니다.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 기간	2021. 2. 3.(수) ~ 총원 완료 시 까지 ※ 월~금요일 19:00까지 / 토요일 14:00까지	▶ 문화관 1층 입학관리팀 ※ 전형료 : 20,000원
면 접	미 실시	
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 대학 홈페이지
등 록	개별 통지	

※ 모집인원에 미달 될 경우 2021. 2. 28.(일)까지 총원 모집합니다.

4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지원자격1) 또는 지원자격2) 해당자
지원자격 1) 해당자 ①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경력 9개월 :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의 4가지 가입증명서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② 현재 재직중인 산업체장이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에 동의한 자
지원자격 2) 해당자 - 선취업 후진학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1.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에서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MOU)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협약 현황 : 세무회계정보과 +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 대구지역 상업계열 특성화고 5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위탁기관에서 1년간 직업교육 실시

5 산업체 범위 및 제출서류

가. 산업체 범위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②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⑥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⑧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⑨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제출수량	비 고
입학지원서	산업체위탁교육생 지원서	1부	대학서식 1번
계 약 서	4. 지원자격 1) 해당자 대학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중 1부	대학서식 2번
	4. 지원자격 2) 해당자 - 선취업 후진학 대학 + 고교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대학서식 3번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중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재직 및 경력증빙서류)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발급)	각 1부 모두 제출	공적증명서 발급방법 참고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발급)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발급)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main.do)에서 발급)		
[4대 보험에 미 가입된 영세 개인사업자가 지원할 경우 추가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종합납세필증명서(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등) 1부 ※ 관할세무서에서 발행			

6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가. 원서접수 방법

구분	내용
인터넷 접수	· 계명문화대학교 홈페이지 : www.kmcu.ac.kr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계명문화대학교 본관(문화관) 1층 입학처 입학관리팀 · 접수시간 : 09:00~19:00(토요일 14:00)까지 접수, 일요일·공휴일 휴무)
우편 접수	· 지원서 및 추가제출서류(전형료 소액환 포함)는 원서접수 마감일 19: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내용 : 입학지원서, 추가제출서류(5-나 참조) · 주소 : (우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계명문화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전형료 납부	· 금액 : 20,000원
수험표 출력	· 대학 홈페이지 → 입학 홈페이지 → 원서 접수하기(수험표 출력하기)

나. 전형방법, 위탁생 선발 우선순위

- 1)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2) 위탁생 선발 우선순위 - ① 단체협약 기관 근무자 ② 산업체 경력이 많은 자

7 전형료 환불 안내

가.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전형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료 환불 사유	입학전형료 환불 금액	비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질병/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해당사유의 증빙서류 제출

- ※ 면접고사 대상자가 해당 고사에 결시하는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비용이 반환 금액 이상일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입학 전형료 반환 방법의 세부 방법은 추후 입학홈페이지(<http://ipsi.kmcu.ac.kr>)에 공지합니다.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험생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생부 자료, 졸업(예정)연도, 환불 계좌 등
- 보호자 정보 : 수험생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 학교 정보 : 고교명, 학과 NEIS 코드 등

나.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합격자 발표와 관련한 외부업체 제공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서접수 시 받고 있으며, 부동의 시 입학전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를 원서마감일 19:00까지 대학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 됩니다.

나. 입학 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학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입학일 이전에 원서접수 당시 재직 중인 직장을 퇴직한 경우

다. 재직여부 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교육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2월과 8월)까지 4대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재직여부를 확인**하되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 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 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1.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합니다.

라. 위탁교육생의 제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됩니다.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할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6개월 내 다른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또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합니다.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마. 지원자의 원서기재 및 입력오류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입학지원서 접수 후 수험표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험표는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지원자 본인이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출력바랍니다.

아.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10 장학금 안내

(※ 금액 2020학년도 기준)

구분	학과	입학금	수업료
정규학생	SNS마케팅과, 세무회계정보과, 사회복지상담과	334,000원	2,560,000원
산업체위탁생(일반자격 해당자) - 입학금 감면 - 수업료 일정액 800,000원 감면 (수업료 약 31.2%)	SNS마케팅과, 세무회계정보과, 사회복지상담과	- (334,000원 감면)	1,760,000원 (매학기 800,000원 감면)
산업체위탁생(선취업 후진학자) - 입학금 감면 - 수업료 50% 감면 (산업체위탁장학금 30% + 전공경력장학금 20%)	SNS마케팅과, 세무회계정보과, 사회복지상담과	- (334,000원 감면)	1,280,000원 (매학기 1,280,000원 감면)

※ 재학기간 내 휴학 시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학금은 매 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균 평점 2.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추가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2020학년도 선발기준]

○ 자격조건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직중인 자

○ 유형별 지원조건 - (중소, 중견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 지원방식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신청 및 선발여부 확인 /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필수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의 경우 산업체위탁생 장학금과 함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대학서식 2)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계명문화대학교와 () (이하 "산업체" 라 한다)은(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 (위탁교육의 과정과 단위별 인원)

-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정으로 한다.
- ② 위탁과정 및 위탁생수는 다음과 같다.

위탁교육 과정	위탁생수
학과(부)	명

제3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 ① 위탁교육대상자는 재직회사에서 추천한다.
- ② 대학은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의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른다.

제6조 (산업체의 시설이용)

약정에 의거 대학이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교육비 및 등록)

위탁교육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정규학생 납입금과 동일하게 하되, 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교육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교육생은 계명문화대학교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 (유의사항)

- ① 위탁생 입학 후 재학기간에는 반드시 산업체에 근무하여야 하며 매학기 시작 전월(2월과 8월)까지 4대보험 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2학기만 해당) 등도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② 위탁교육생의 제적기준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할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다른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와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한다.
 -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1.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한다.
 -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부 칙 본 계약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 사람은 우리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귀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산업체명 :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박 승 호

대 표 :

(인)

선취업 후진학 위탁교육 계약서

계명문화대학교와 (산업체:)와 (졸업고교:)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가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MOU)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졸업 시까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조건으로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계속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 (위탁교육의 과정과 단위별 인원)

-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정으로 한다.
- ② 위탁과정 및 위탁생수는 다음과 같다.

위탁교육 과정	위탁생수
학과(부)	명

제3조 (위탁생의 자격)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써 출신고교와 재직 산업체와 계명문화대학교 3개 기관에서 위탁교육협약을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 ① 위탁교육대상자는 출신고교와 재직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 ② 대학은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의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른다.

제6조 (위탁교육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교육생은 계명문화대학교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7조 (유의사항)

- ① 위탁생 입학 후 재학기간에는 반드시 산업체에 근무하여야 하며 매학기 시작 전월(2월과 8월)까지 4대보험 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2학기만 해당) 등도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② 위탁교육생의 제적기준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할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다른 산업체 이직한 경우 또는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승의를 거쳐 예외 적용한다.
 -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1.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하여야 한다.
-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명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합의에 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고등학교

산업체

대학

고교명 :

산업체명 :

대학명 : 계명문화대학교

교장 :

직인

대표 :

직인

총장 : 박승호

직인